

내에 실재하지 않는 기업에 판매세를 징수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 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일 온라인 판매세가 주정부로부터 징수가 된다면, 무수한 사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기존의 지역적 판매세는 그 징수 대상이 명료하였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판매세는 1만 개가 넘는 미국의 조세 관할 구역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적 온라인 판매세가 경쟁을 저하하고 기업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전의 FEE에서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원격 거래 평등 법(RTPA: Remote Transactions Parity Act)에 따르면 주정부의 세금 징수에 있어 물리적 실체의 개념이 사라진다. 주의 지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징세가 가능하고, 다른 주에 위치한 사업체를 제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감세를 지향하는 조세 경쟁도 저하될 수 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다. 이자는 인근의 버지니아의 유류세가 더 저렴하기에 주유를 버지니아에서 한다. 그런데 만약 이자의 거래에 RTPA가 적용된다고 해보자. 유류세 징발 주체는 차량 번호판에 적힌 주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이런 구조는 경쟁을 저하하는 주들 간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실제로 대형 사업체들이 이 법을 지지하는 것도 그런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손쉽게 치고 올라오는 사업체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선출할 수 없는 다른 주의 사람들에게 별 관심도 없다. 결국에는 소비자의 소득과 선택만 줄어들고 좁혀지는 것이다.”

만약 인터넷 판매세가 시행된다면, 인터넷 상의 선택의 폭은 줄어들 것이고, 시장은 파괴될 것이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은 악화될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 거래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만큼, 온라인 소매 활동은 공공 정책상으로도 진흥되는 것이 옳다.

나아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감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징세한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일부 주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판매세를 받지 않고 있다. 이 주들의 혁신과 노력에 따른 결과는 정당한 것이다. 공권력의 비대화는 지양되는 것이 옳으며, 조세 경쟁의 과정이 그 비대화를 막는 수단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the-internet-taxation-fight-isnt-really-about-internet-taxation/?utm_source=FEE+Email+Subscriber+List&utm_campaign=1c96e8456c-

MC_FEE_DAILY_2018_03_28&utm_medium=email&utm_term=0_84cc8d089b-1c96e8456c-108033149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이 글은 FEN 경제지식 네트워크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fen.or.kr/?p=3391>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